

국회에서 의결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인

2017년 10월 31일

국무총리 이낙연

국무위원

박상기

법무부장관

●법률 제14969호

상법 일부개정법률

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31조제1항 중 “書面”을 “서면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·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제735조의3제3항 중 “서면”을 “제731조제1항에 따른 서면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타인의 서면의 범위에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·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하고, 단체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타인의 생명보험의 경우와 같이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